
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
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철거·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2019. 7. 17.

공 주 시



1. 통지기간 : 2019. 7. 17. ~ 2019. 7. 31.
2. 통지방법 : 공주시 홈페이지 게시
3. 직권말소일 : 2019. 7. 17.
4. 말소 내용

가. 처분의 제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
나. 당사자	성명(명칭)	박*두	건축물 위 치	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11
	주 소 (대상상주소)	서울 강동구 방이동 가악맨션(삼부) 2**-***	건축물 현 황	주1 1층 목조 주택 68.64㎡
다. 처분의 원인된 사실	건축물의 철거·멸실			
라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건축물대장 직권말소			
마. 법적근거 및 조문	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			